## 2022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계획(안)

안 건 1 번 호 (제508호) 제안년월일: 2022. 7. 6.

제 안 자 : 익산어양중학교장 소관 부서 : 교육과정지원부

#### 1. 제안 이유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정착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2. 주요 내용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1)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시행령 제15조)

2) 위원 선출: 교원위원 3명, 학부모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3) 위원 임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4) 개의·의결 정족수: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 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 라. 익산어양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3. 기대 효과

- 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으로 교육활동 보호 체제 구축
- 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
- 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구성
- 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으로 교육력 제고

붙임 2022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계획(안) 1부.

## 2022학년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계획



2022.3.

익산어양중학교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 배경

- 가. 교육활동 침해 증가 →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동시 위협
- 나.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빈도수 증가 → 교육권의 실추 및 교원 사기 저하

## 2. 추진 필요성

- 가. 교육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정착 필요
- 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원치유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지원 방법 필요

## Ⅲ 추진 근거 및 목적

## 1. 추진 근거

-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다.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 라.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칙」

## 2. 추진 목적

- 가.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
- 나. 피해 교원의 보호하여 교권 회복
- 다. 연수 실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 교육활동 보호 추진 방안

### 1.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초·중·고·특수학교-필수, 유치원-선택)

#### □ 설치 근거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16조

#### □ 구성

-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시행령 제15조)
- (위원 구성)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교원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음)
- (위원 선출) 교원 3명, 학부모 2명, 지역사회 인사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학부모 전체회의 등 에서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 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개의·의결 정족수)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 역할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및 사건 처리 업무주관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 회의 소집

- ㅇ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ㅇ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ㅇ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 회의 준비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사안신고서,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사실확인서(목격자), 증거자료 등)
- 관련 교원과 침해자 간 갈등 예방 및 참고인의 비밀 보장을 위해 피해교원
   과 침해자 측의 대기 시간과 장소를 분리해서 준비

#### □ 회의 진행(예시)

- ① 개회선언, 위원 참석 확인 및 위원장 인사말·안건 상정
- ② 제척·회피·기피 확인
-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사건 조사 보고 및 질의 응답)
- ④ 당사자(피해교원, 침해자) 모두가 분쟁조정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
- ⑤ 피해교원 진술(이후 피해교원 퇴장)
- ⑥ 침해행위자 진술(이후 침해행위자 퇴장)
- ⑦ 교육활동 침해 여부 결정
- ⑧ 침해행위자 조치 심의 및 조치 결정
- ⑨ 피해교원 보호 조치 논의 및 결정
- ⑩ 불복절차 안내 및 폐회

#### □ 회의 개최 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서」작성 및 제출
  -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과 교원인사과로 제출
  -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원인사과로 제출

#### □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무관용 원칙 적용(축소·은폐 금지)
- ㅇ 사안 발생 시 즉시 피해교워 보호조치
-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심각한 사안인 경우 유선보고)

##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대응

### 가.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육활동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진료지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음)
  -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지도·감독 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 ㅇ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됨

###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 □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관용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 이고 엄정하게 문제 해결
- □ 교육활동 침해 관련 분쟁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및 조치를 통한 해결
- □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경찰 신고 및 적극적인 형사 고소·고발 대응

## 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대응

- □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고 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 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 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교원지위법」제16조의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함

## 나. 교육 방법

교직원·학식	뱃.학생의	보호자별로	교육	실시	

- □ 학생의 경우 학급 단위 교육을 권장
- □ 학부모 교육은 학교 참여 활동과 연계 실시 가능
- □ 가정통신문과 누리집을 활용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홍보

### 다. 교육 내용

### □ 교직원

- ㅇ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ㅇ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ㅇ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학생

- ㅇ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학생의 보호자

- ㅇ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ㅇ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예방교육 자료 활용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교원인사과-교원치유지원센터-자료실-12,19번

## Ⅳ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 1. 사안처리 방향 및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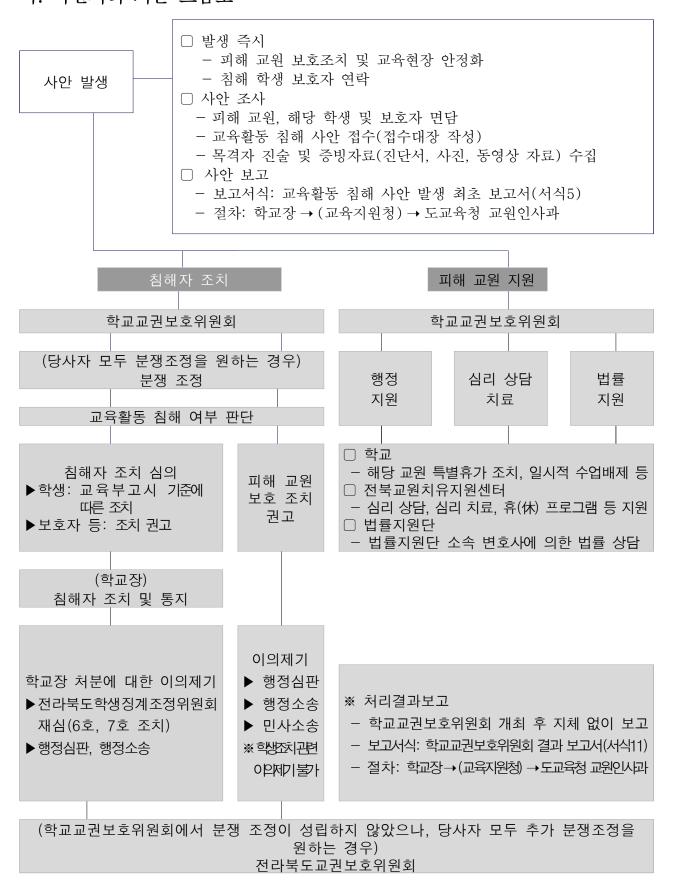
### 가. 사안처리 방향

-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강화
  - 학교 구성원간 인권존중 교육을 통해 예방적 지원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상담 및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예방을 위한 연수 및 대응 역량 강화

## □ 사안 발생 시 적극적 교원 보호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 ㅇ 피해교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강화
- ㅇ 즉각적인 사안처리로 2차 피해를 막고 사실 왜곡, 와전되지 않도록 조치

#### 나. 사안처리 기본 흐름도



## 2. 침해자별 사안처리 세부 절차

## 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 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ul> <li>■ 피해 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li> <li>■ 주변 교원, 담당 교원</li> <li>-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 교원이 침해 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 행위 학생과 분리 조치</li> <li>- 침해 행위자 진정 조치</li> <li>- 보호자 연락,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li> <li>■ 학교 관리자</li> <li>-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li> <li>- 피해 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li> <li>-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li> </ul>	● 주변 교원 또는 담당 교원에게 도움 요청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학교 관리자의 피해 교원 보호 ■ 사안 조사(담당 교원) - 침해 학생 진술서 확보(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치료·안정 이후 피해 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양 당사자에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사실확인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병가 수업및업무고려등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분쟁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 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보호자)의 진술 기회 부여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심의,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당사자, 학교장에 서면통보  - 관할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필요한 보호조치 요구)
학교장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ul> <li>●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지위법상 조치(처분)</li> <li>●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조치(처분) 통지 및 불복절차 안내</li> <li>─ 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전학·퇴학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외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제기)에 할 수 있음</li> </ul>	─ ■서면을 통한 조치
조치 이행 및 사후처리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조치 이행 - 1호부터 5호: 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 6호: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7호: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1회 연장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심리적 회복 지원

※ 본 절차는 예시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 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 피해 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주변 교원, 담당 교원	■주변 교원 또는 담당 교원에게 도움 요청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학교 관리자의 피해 교원 보호 ■ 사안 조사(담당 교원)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치료·안정 이후 피해 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당사자 중 한 쪽이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양 당사자에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 피해사실 확인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고려 등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분쟁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 교원 및 학부모·보호자 등의 진술 기회 부여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피해 교원 보호조치 심의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 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사자, 학교장에 서면 통보  - 관할청에 심의 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조치 요구)
사후 처리	<ul> <li>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li> <li>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분쟁은</li> <li>당사자 신청에 따라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li> <li>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단 요청</li> </ul>	■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본 절차는 예시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3. 교육활동 침해 해결을 위한 담당자별 대응 방법

담당자	기본 대응 방법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시						
	• 학교 대응팀 구성 및 업무 담당자 창구 단일화						
크레 크레 크레	• 긴급 상황 시 112 등에 신속히 신고						
관리자	• 피해교원 보호 조치: 상담 및 안전 조치(공무상병가, 특별휴가 등)						
	•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안내						
	• 관할청 보고 및 필요시 고발 조치						
	• 가해자와 피해교원 양측 면담(가해자가 학생 이외인 경우)						
	• 동기, 내용, 시기, 관련자 등 조사						
	• 피해교원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						
학교교육활동(교권) 보호업무담당자	• 사안 조사 내용 바탕으로 6하 원칙에 따른 상세 보고						
	• 사고 경위 파악 및 경위서 작성						
	• 가해자와 피해교원 양측 면담(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 즉시 상황에서 벗어나 동료 교원들에게 도움 요청						
	• 동기, 내용, 시기를 상세히 기록						
리의 <b>그</b> 이	•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 교원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관리자 또는 학교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육활동 보호 법률자문단 법률 상담 요청 가능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및 진료 지원 요청 가능						

## ∨ 교원치유지원 추진 방안

## 1.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 가. 법적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나. 구성 현황

구성	직위	전화번호	기타
센터장	교원인사과장	239-3298	
	장학사(유치원)	239-3296	
유·초등담당	장학사(초등)	239-3294	팩스
	전문상담사	239-3730	220-9409
중등담당	장학사(중등)	239-3308	
	전문상담사	239-3729	

## 다. 위치

□ 전라북도교육청 7층 교원인사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라. 역할

-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 □ 교원치유지원 프로그램 운영

## 2. 교원치유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 개인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프로그램

#### □ 대상

○ 교육활동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 등으로 상담(치료)을 희망하는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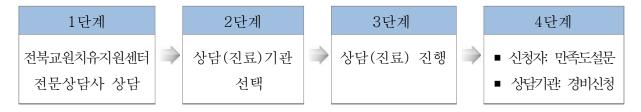
#### □ 지원 내용

- ㅇ 전문 심리상담가 연계 심층 상담 진행
- ㅇ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치료 진행
- 연 10회기 지원(1.1.~12.31. 회계연도 기준. 예산의 범위 내)
- 상담 및 진료 1인당 최대 70만원, 검사비 별도(20만원)
- 동일 사유로 연장 시 최대 10회 (50% 지원, 50% 본인부담, 최대 35만원)
  - · 업무담당자와 상담 후 연장신청서 및 기관의견서 제출
  - · 상담기관-회기별 비용의 50%지원, 진료기관-진료비용 지원
- □ 지원 시기: 연중

### □ 지원 기관

○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약된 전문심리상담기관(51개) 및 정신건강과의원(36개)

### □ 지원 절차



- 희망하는 교원이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신청**
-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학교에서 피해 교원에게 적극 안내**
- 상담 후 프로그램 및 상담기관에 대한 만족도 설문 실시
   (전북도교육청 누리집: 참여/제안 →설문조사→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 나.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8개 과정)

- □ 지원 대상
  - 교육활동 침해·피해 경험을 치유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교원
  - 교직 직무스트레스 해소로 교육력 회복을 원하는 교원
  -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교원
- □ 지원 내용
  - 그룹당 10명 이내의 소그룹 단위로 프로그램 운영
- □ 지원 시기: 4월초 신청받아 선정학교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운영
- □ 예술·위예 치유 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

음악치료

영화치료

원예치료

로 그 램

ᄑ

미술심리 전문상담기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교사의 심 리 치유 프로그램

즉흥연주(행드럼), 악기연주 개입을 통한 교사의 심리 치유 프로그램 '내 삶의주인공인 나''영화'를 매개로한 집단상담

다양한 원예자원을 활용한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회복, 성취감 항상 등의 치료 프로그램

운 영 방 법

2시간씩 3·5회기

2시간씩 3~5회기 2시간씩 3·5회기 2시간씩 3-5회기

장 소 학교 또는 지정기관

지정기관

지정기관

학교 또는 지정기관

대 상

- 교육활동 침해·피해 경험을 치유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교원
- 교직 직무스트레스 해소로 교육력 회복을 원하는 교원
-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교원

#### □ 치유와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 TRC(타로카드)를 활용한 소통 프로그램

## 관계성 증진 프로그램

## 정신분석 관점의 심리지원 프로그램

## 모래놀이로 떠나는 마음여행

프로그램

타로카드를 활용하여자신의기질 유형 이해를통한 소통 증진프로그램

지금-여기에서 일어 나는 신체, 생각, 감정과 욕구, 행동, 환경 등을 알아차리고 나와 너의 연결성과 의미를 자각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자신의 내면세계 탐구를 통한 정서 발달 촉진 프로그램 모래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정신 내면과 만나서 자신의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소통 하는 관계치료

운 영 방 법

2시간씩 3-5회기

2시간씩 3·5회기 2시간씩 3·5회기 2시간씩 3-5회기

장 소

지정기관

지정기관

지정기관

지정기관

대 상

- 교육활동 침해·피해 경험을 치유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교원
- 교직 직무스트레스 해소로 교육력 회복을 원하는 교원
-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교원

## 다. 학교단위 교원 치유 프로그램

### □ 지원 대상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민원, 학생 사안, 학교 구성원 간 갈등으로 치유와
   교직원간 동료성 회복이 필요한 학교
- 학교별 맞춤형 계획 작성 및 운영할 수 있는 희망 학교

## □ 지원 내용

- ㅇ 학교별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운영
- ㅇ 상담 또는 갈등 조정 프로그램 2시간 포함 운영

- □ 지원 시기: 연중
- □ 장소: 신청 학교 또는 학교 희망 장소
- □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단위학교에서 협의를 통해 신청서 제출 (공문)	<b>&gt;</b>	학교 선정	$\Rightarrow$	운영계획서 제출 (공문)	$\Rightarrow$	운영비 교부	 프로그램 추진	단위학교에서 결과보고서 제출(공문)

## 라. 교원치유 휴(休) 프로그램

- □ 지원 대상
  - 전라북도 소속 교원 중 교육활동 침해로 사안이 보고된 해당 교원
  - ㅇ 학생 사안 및 민원 등으로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 □ 지원 내용

□ 시원	ਮਿਲ						
	자연명상 스테이 프로그램(숙박형)	문화체험 휴(休) 프로그램	숲체험 휴(休) 프로그램				
프 로 그 램	친환경 숙소와 밥상으로 더불어 휴식하고 힐링하는 잠깐 멈춤 스테이	체험활동(운동, 요가, 건강식단 등)을 통한 심신치유 프로그램	치유의 숲을 활용한 스트레스 해소, 신체 면역력 회복 프로그램				
시기	연중	연중	연중				
인 원	개인	집단	집단				
장 소	지정기관(충주)	지정기관(순창)	지정기관(진안)				
대	- 교직 직무스트레스 해소로 교육력 회복을 워하는 교워						

-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교원

#### □ 지원 절차



##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 운영

### 가. 법률 상담 지원

- □ 지원 대상
  - 전라북도 소속 교원(기간제 포함) 및 교육전문직원

### □ 지원 내용

- ㅇ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연계한 법률 상담
-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절차 안내
- ㅇ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한 법률상담
- □ 지원 시기: 연중
- □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담당자 상담	$\Rightarrow$	신청서 제출	$\Rightarrow$	법률상담 진행	<b>&gt;</b>	<ul><li>● 신청자: 만족도설문</li><li>● 상담기관: 경비신청</li></ul>

## ㅇ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순	성명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1	김수태	김수태 법률사무소	271-8890	271-8848	전주
2	김성운	법률사무소 올인	226-9500	226-9501	전주
3	우승원	법무법인 세상	275-2766	274-1322	전주
4	황선철	황선철 법률사무소	278-4433	278-4435	전주
5	김용빈	법률사무소 한서	903-0090	903-0334	전주
6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837-3800	837-3802	익산
7	유경재	유경재 법률사무소	452-9900	451-5700	군산

## 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 지원 대상: 전라북도 소속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육전문직원
- □ 지원 내용
  - 보상범위: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법률상 배상 사고 당(최고 2억)
     연간 총15억 한도 보상(전라북도교육청 피보험자 배상 총액)
  - 보장기간: 2022. 4. 1. ~ 2023. 3. 31.
  - 소급담보일: 2018. 4. 1.(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소송은 2019. 4. 1일 적용, 형사방어비용 담보는 2021. 4. 1일 적용)
- □ 지원 시기: 연중

## 다. 교육활동 침해 중재지원단(선도인력) 운영

- □ 지원 내용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현장에 파견하여 상담 및 갈등 중재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강사 지원
  - 문의: 교육지원청과 교원인사과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장학사
- □ 지원 시기: 연중

## 라.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활동보호 연수
  - 대상: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및 희망 교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내용: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
  - 시기: 상반기 20~25회 실시

## □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지원

- 대상: 전라북도 소속 교원 350여명
- 내용: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 및 교육활동 보호 이해
- 시기: 하반기 4개 과정 운영(과정당 15~30차시, 2과정이내 신청 가능)

마. 권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14개 교육지원청
□ 지원 내용
<ul><li>관내 학교 교원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지원</li></ul>
○ 관내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및 조사
(교육활동보호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적극적 대응)
<ul><li>전문 상담기관, 의료기관 및 법률상담 연계 지원</li></ul>
○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활동보호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구성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 및 중재지원단(선도인력) 28명
□ <b>지원 시기:</b> 연중
바.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제작·보급
□ <b>지원 대상:</b> 전라북도 소속 교원
□ 지원 내용
○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보급(1교당 3~5권)
○ '1교사 1리플릿' 제작·보급
- 리플릿 형태로 모든 교사에게 보급
-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및 교원치유프로그램 안내
VI 기대효과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으로 교육활동 보호 체제 구축
□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으로 교육력 제고

## VI. 부 록

### 익산어양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익산어양중학교교권보호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익산어양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익산어양중학교교권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행위로 본다.
-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8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0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 제1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 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 1. 이 규칙은 2019. 10. ○.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칙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2021.9.24.개정된「교원지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2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인원 수정함)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신청인)

① 피해	교원 인적사항	② 상대방(	(학생, 보호	호자 등) 인적사항
소속학교		성명	병	
성명		피해 교원고	과의 관계	
연락처(휴대폰)		연락처(휴	후대폰)	
기타		기	1	보호자 성명, 연락처 등
③사안 내용				
④피해 교원의 요청사항				
⑤목격자(참고인) 유무		유( 성명: }가 다수인		
ㅠㅜ ⑥ 기타 입중자료(첨부)	※ <b>寸</b> 付人	77 나무인	<u> 6</u> 下	717 0
⑦분쟁조정절차 신청	신청함 🗆		ঠ	]청하지 않음 □
⑧ 작성일			작성자	(서명)

<sup>\*</sup>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익산어양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대장

	신청'	인 인적	사항	피신청	당인 인조	적사항					
순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교원 과의 관계	내용	요구서 접수일		조 치 결 과	결 과 통보일
							0				
							0				
							0				

##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성 명		소 속		학교
① 피신청인	연락처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7202	주 소				
② 사약	<u></u> 내용				
③목격자 유	(참고인) 무	□ 무 □ ※ 목격	유( 성명: 자가 다수인	관계: 경우 모두	) 기록 등
	일증자료 부)				
⑤분쟁조정	절차 신청	신청함 [		신	청하지 않음 🗆
⑥관련 보호ス	학생의 } 성명			연락처	
⑦작	성일			작성자	(서명)

<sup>\*</sup>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 실 확 인 서(목격자)

성 명		소 속		학교						
연락처 (휴대폰)										
주 소										
사안	사안과 관련하여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내용										
작성일			작성자	(서명)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최초 보고서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최초 보고서												
피해 교원 ① 성명:	:	보		_	면락처:	□ <b>,</b> 1 ·	<b>-</b>	1.	-1 <i>(</i>	\		
③ 소속기관명:       □공립       □사립       □기타(       )         ④ 교육활동 침해자:       □학생       □보호자       □기타(       )												
	일시		년	윝	="	일		시	분경			
사안	장소		학교		\ 년	반		실 안				
내용	구체적 행위내 용	예시:	2019년 을 하고 ○'이라고	있던	000	학생을						
교육활동 침해유형	□ 상해와 폭행 죄       □ 손괴의 죄       □ 성희롱         □ 협박의 죄       □ 불법정보유통행위       □ 반복적 부당한 간섭         □ 명예에 관한 죄       □ 공무방해죄(국·공립)       □ 학교장의 판단         □ 성폭력범죄       □ 업무방해죄(사립)       ( )											
피해	(심리·신체적 상태)											
교원	(조치 사항)											
침해자	(심리·신체적 상태)											
실에스	(조치 사항)											
학교장 의견												
사안	분쟁조기	정	분정	생조정	] 희망 <sup>c</sup>	여부		뷴	<u>-</u> 쟁조정	불성	[립 사유	•
처리 진행	여부		□ 피형	개 교육	원 🗆	침해자						
계획	·	보호	위원회 7	개최여	정일:			년		실	일	
	타사항 차 여부 등	<del>-</del> )	□ 형시	고소		민사소	송	□ フ) ¹	타:			
	작성자: 직(교사) 성명: (서명) 보고자: 직(교장) 성명: <b>[직인]</b>											
사안보고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공문 발송)												
	(사안 발생 <b>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공문</b> 즉시) <b>발송)</b>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٥j	성명	소 속					
인 적 사 항	연락처	지 위					
항	주 소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장 소						
	안 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정 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사연	<u></u> 라의 요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del></del>	의 사항	<ol> <li>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교(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li> <li>출석하실 때는 이 안내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li> <li>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진술 의견서(학생, 학생의 보호자 등 의견서)을 작성하여 회의전일까지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어양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인

○○○ 귀하

## 기피 신청서

	성 명		소 속	학교					
기피	연락처		지 위						
신청인	주 소								
	기피 대상자								
기피 신청 내용	기피 신청 이유	※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여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지위향상 신청합니다		위한 특별병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	•						
		성명	(서명)						
익산어양·	익산어양 <del>중</del>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귀중								

## 분쟁조정 합의서

문생소성 합의서									
	사안명: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신청	성 사안						
분정	조정 신청인	분쟁조정 피신청인							
성 명		성 명							
구 분	(교원, 학생, 보호자)	구 분	(교원, 학생, 보호자)						
연락처		연락처							
주 소		주 소							
당사자의 의견	<ol> <li>신청인 의견 요지</li> <li>피신청인 의견 요지</li> </ol>								
조정결과	(예시)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오를 받아들임.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울 4. 이 분쟁 사안과 관련하여 5. 다만, 피신청인이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해한 점에 대하여 로 원만하게 관계를 려 관할청 및 학교(	이해하고 피신청인의 사과 를 회복하도록 노력함. 에 조치요청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분쟁조정 신 청 인 분쟁조정 피신청인	•	명 또는 날인) 명 또는 날인)						

| |익산어양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회 귀중

## 제 회 익산어양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회의록(예시)

일 시		20	년	월	일(요일)	시	분	
장 소								
조정위원: 1.		2.			3.			
		신청	인(피	해 교육	일)	참석 [		불참 🗌
관련당사자 참	석유무	피신	청인(힉	생, 보	호자 등)	참석 [		불참 🗌
		피신	청인	보호자	-	참석 [		불참 🗆

#### O 회 순

- 1. 개회 2. 당사자 참석여부 확인 3. 조정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 4. 분쟁조정절차의 목적, 진행 순서, 주의사항 전달
- 5. 관련 당사자 진술(피해 교원, 침해자(학생, 보호자 등))
- 6. 조정합의서 작성 7. 폐회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참석위원 명단]

### [분쟁조정의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조정위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는 분쟁 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는 학생과 자녀의 교육이라는 공동의목표를 가진 교육 참여자로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조금씩 양보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각각당사자의 진술을 따로 받을 수도 있고 함께 진술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실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상대방의 진술이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 중 당사자에 대하여 제척 사유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도록 하 겠습니다.

#### [당사자 의견 청취]

조정위워:

#### [질의응답]

조정위원: 제출된 자료와 분쟁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본 사 안에 대한 조정위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신가요?

[조정안의 권고]

[조정성립 시 분쟁조정합의서(서식7) 작성]

### [조정불성립 시 이후 절차 안내]

조정위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조정신청인은 전라북도교권 보호위원회에 다시 한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 정 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고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는 재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 업무 담당자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폐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의결서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요지 및 의결 내용

### 2. 침해 학생 조치

	이 름 (학년/반)	교육활동 침해 유형 (관계법령)	조치 결정 (관계법령)	의결 내용
1	000 (0학년0반)	모욕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사회봉사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제2호)	만장일치
2				
3				

### 3. 피해 교원 보호조치

이 름	보호조치의 내용	의결 내용
000	특별휴가 5일 권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 상담 권고	만장일치

20 년 월 일

익산어양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 제 회 익산어양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예시)

					·— ·				
일 시		20 년	월	일(요약	일) 시	五			
장 소									
위원정수:	명	참석위위	원: 명		불참위	기원: 명			
		신청인(피해	교원)		참석 🗆	불참 □			
관련당사자 참	석유무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참석 🗆	불참 □			
			참석 [	불참 🗆					
O 회의 순서         1. 개회       2. 당사자 참석여부 확인 및 성원보고       3.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4. 회의 목적, 6. 관련 당사자						시 모고			
0. 선선 3/1/1 7. 사안협의		게 쓰건, 섬에스	(4′8, 5	로모자 등	7))				
O 발언자의 내		   수서대로 구?	 체접 0 로	기 채					
		. 교기에스 1/	11 7	7   7					
	0 17 1								
 [개회 및 인	1 <i>x</i> 11								
	71 ]								
간사:									
~L^\]•									
   [위원 제척	두 사유	화이]							
	0 7 1 11	7 61							
   [진행절차,	주이 <b>사</b> 히	- 저다]							
위원장:	17/18	(건크)							
। गास्त									
   [간사의 사	아이기	서면 1							
[{\dangle \text{\langle r}} \]	한 표시	[원명]							
[다시카(평)	ല് ചരി	의견 청취 및	므다1						
[ <b>당사자(끡</b> 역   위원장:(신불	• –	<b>નિ</b> 건 생위 및	正日]						

### [당사자(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의견 청취 및 문답]

위원장:(신분 확인)

#### [사안 협의]

위원장: 제출된 자료와 분쟁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본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침해 학생 조치 사항 심의]

#### [피해 교원 보호조치 사항 심의]

#### [폐회]

위원장: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 년 제○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사봉 3타)

#### [조치결정 및 의결내용]

### 1. 침해 학생 조치

	이 름 (학년/반)	교육활동 침해 유형 (관계법령)	조치 결정 (관계법령)	의결내용
1				
2				
3				
4				

#### 2. 피해 교원 보호조치

이 름	보호조치의 내용	의결내 <del>용</del>	

## 익산어양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침해자용)

침해자	성	명	소속학	·л	학	년/반	
실에서							
조치이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요지)							
교권보호위원 회 개최일시		20	년 월 일	](장소:	)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침해 행숙	위 유형	<ul> <li>□ 상해와 폭</li> <li>□ 명예에 관한</li> <li>□ 손괴의 죄</li> <li>□ 공무방해(국·</li> <li>□ 업무방해죄(/</li> <li>□ 성희롱</li> </ul>	행의 죄 · 죄 공립) 사립)	□ 협박의 □ 성폭력 <sup>1</sup> □ 불법정 <sup>1</sup> □ 반복적 □ 학교장 <sup>1</sup>	죄 범죄 보유통행위 부당한 간섭 의 판단 )	
	침해자 조치 내용						
재심안내	전, 퇴학 날부터 15 전라북도학 (교원지위	조치에 이의 5일 이내 또 학생징계조 <sup>2</sup> 법 제18조	니가 있는 학생 E는 그 조치가 성위원회에 재심 제8항)	또는 그 5 있음을 안  을 청구할	보호자는 위 날로부터 수 있음.	조치를 받은 10일 이내에	
침해 학생 불복절차 안내	국공립 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2.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청구(행정소송법 제20조)					
	사람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 있음.	

20 . . . . 익산어양중학교장(직인)

## 특별교육 안내문(예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교육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학교 ○학년 ○반 ○○○와 보호자
이수내용	○○○ 특별교육 ○시간 ○○○의 보호자 특별교육 ○시간
이수기관	(예시) ○○교육지원청 WEE센터 (063-○○○-○○○)
이수기한	20

- 2. 사전에 이수 기관에 연락하셔서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한 내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 . .

## 익산어양중학교장(직인)

## 심리치료 안내문(예시)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리치료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학교 ○학년 ○반 ○○○와 보호자					
실수계호	○○○ 심리치료 ○시간					
이수내용	○○○의 보호자 심리치료 ○시간					
이수기관	(예시) ○○교육지원청 WEE센터 심리치료 지정기 관 (063-○○○-○○○)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전문의 (063-○○○-○○○)					
이수기한	20					

- 2. 사전에 이수 기관에 연락하셔서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한 내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초·중등 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제21 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 . .

익산어양중학교장(직인)

## 익산어양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교원용)

구분	소속학교		직위	성 명		
피해 교원						
침 해 자						
조치이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요지)						
침해 행위 유형	□ 손괴의 죄 □	불법정도	□ 협박의 죄 □ 명예에 관한 보유통행위 □ 공무방해죄(국공립) □ 부당한 간섭 □ 학교장의 판단(	] 업무방해죄(사립)		
교권보호위원 회 개최일시		20	년 월 일(장소:	)		
학교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여부 교육활동 침해 인정 또는 불인정 판단					
위원회 심의	피해 교원 보호조치 내용	(예) 특별휴가 5일, 심리상담 및 조언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제15조제1항, 제2항)				
결과 - -	침해 학생 조치 내용	(예) 학교에서의 봉사 1일(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제1호)				
피해 교원의 불복절차 안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경우  1.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억  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국공립 학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2.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청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사립학교		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상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			

20 . . . . 익산어양중학교장(직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서														
피해 교원	기본 정보														
① 성	명:			② 연	락처	:									
	기관명: □공		니시			기타(		)							
	본정보(□힉 `	ŀ생		호자		기타(					) )				
① 성 명				② 연	닥처	:									
③ 주 소					^1							-1			
	일 시		년		월		일		시	7	분	경			
사안	장소		학	亚	학년	1	반		교실	안					
내용	구체적 행위 내용	예시	예시: 20○○년 ○월 ○ 있던 ○○○ 학생 욕설을 하였음												
육 활동 참 유 영	<ul><li>□ 상해와 폭</li><li>□ 협박의 조</li><li>□ 명예에 관</li><li>□ 성폭력범</li></ul>	] } 하	죄 죄			손괴의 불법정 공무방 업무방	보유해 조	통행 ](국 (사립	위 공립) 』)		] 성호 ] 반: ] 학: (	희롱 복적 교장의	부당 <sup>*</sup> 의 판	한 간섭 간	)
	개최일시			년	Ç	실	일		위원	l 수	재적 명			명/출	석
			개시 ブ	부/중	·지										
학교	분쟁조정결	과	□ 조정	성립											
교권 보호			<ul><li>조정</li></ul>	불성	립 립										
모고 위원회			可さ	해 교원	1										
',	조치사항		보호	조치내	용										
	조시시 3		교육 <u>활</u> 조	·동 침 치내용											
학교장	의 조치사항		20	년	월	일(	) 서	면으	로 등	들기숙	P편	발송	등	기록	
통보일	!자 및 방법														
기타사항 (법적절차 등)															
					작	성자:	;		고사)					성기	
(서명)								보ご	고자:	직(	교장	.)		성기	명:
[직	인]														

결과보고

유,초,중학교 고, 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공문 발송)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공문 발송)

##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피신청인							
성명									
구분	(교원, 학생, 보호자)	(교원, 학생, 보호자)							
소속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신청원인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								
증빙자료									
	간에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								
	20 년 월 일	일							
	신청인	: (인)							
전라북도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청구 이유

#### 번 호 일 자 접 년 월 일 재심 청구서 수 접수 자 성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청 구 주소 [학생과의 관계] 인 (전·퇴학) 성명 전소속 학교 학녀 바 학생 (전·퇴학) 피청 ( ) )시 소재지 학교장 조치 학교 )동 구인 학교명 (전·퇴학) (전·퇴학) 월 조치가 있음을 년 일 년 월 일 조치일자 안날 청구 취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청구인: (인)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8항에 의거 조치 중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징계조정위원회에 자료 및 정보 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

#### < 서식 14 >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5항 단서 및 「전라북도교육청 교 육활동 침해 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상(직무상) 요앙승인을 먼저 신청하였나요? □예 □
- ※ 본인은 **공무상(직무상) 요양승인**, **시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등 제3자 에게 동일한 사유로 보호조치 비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 이를 신청한 경우에 교육청 에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신성인	전화번호						
	소속						
치료를 요하는 부분(병명)							
치료기간	20		. ~ 20 .	( 9	일)		
	보호조치의 종	류	진료내용(	병명)	예상금액		
신청액	심리상담 및 3	트언					
건경곡	치료 및 치료를 위험	한 요양					
	합계						
보호조치 종류	신청인	<u></u> 제출서	류(각 1부)		비고		
공통사항		<ol> <li>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서</li> <li>(침해자의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li> </ol>					
심리상담 및 조언	1. 학교 교권보호위 2. 상담기관의 청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 학교 교권보호위 2. 요양급여의 내용 3. 요양급여 청구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 1. 심리 및 상해 치료 비용은 1회 10만원 이상 청구,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 됩니다.
- 2. 신청서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공문 접수
- 3.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 있거나 기타 보험 으로 보상받은 경우 **중복 청구 불가**
- 4. 비용지급 대상자 선정 여부 결과 통보(공문)는 접수일로부터 4주 정도 소요 5. 비용부담 대상자로 선정되신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담·치료 시작**, **1년 이내에 상담·치료** 종결

## 교육활동 침해 사안 형사고발 요청서

피해 교원 성명		(서명	병 또는	: 날인)	소 속	학교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연 락 처 (직 장)	
사건 일시	년	월	일	시	사건장소	
사건 내용			육하	원칙에 ㄸ	<b>-</b> 라 구체적으로	기재.
형사고발 요청이유						
입증자료						
침해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보호자 성 명	침해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제출 (교권업무담당자는 형사고발 요청서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자료 일체를 전라북도교육청 공문 접수)

##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교원의 지위 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임명)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익산어양중학교장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임명 동의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성 명					생년월	일일			
소속					직	그			
주 소									
ನ ಪ್ರತಿ	근무처				휴대전	화			
연락처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_\_\_\_\_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 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침해자·신 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년월일성 명(서명)

익산어양중학교장 귀하

# 익산어양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명단

임기: 2022.3.1.~ 2024.2.28.

순	성 명	위원 구분	연락처	비고
1		위원장(교원위원)		교감
2		교원위원		
3		교원위원		
4		학부모위원		
5		학부모위원		
6		지역위원		전담 경찰관
		간사(회의록 작성)		